

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최혁진의원·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84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3.

발 의 자 : 최혁진·민형배·장종태
정혜경·한창민·김우영
조계원·김문수·문정복
양문석·이개호·정준호
이성윤·소병훈·안도걸
윤종오·박지원·김준혁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·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의 유치와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국제회의산업에 관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책무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, 기본계획 등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 등 연대와 협력,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 조직들과의 협력 체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이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·진흥에 관한 책무 규정에 지방자치단체

를 포함하고,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제회의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·진흥하여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하고,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조 및 제6조).

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 중 “국가의”를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국가는”을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회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회의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회의의 기획·유치 및 운영과정에서 환경보전, 포용성, 인권, 공정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, 이를 위하여 사회연대경제 조직(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, 「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의 협력 및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제1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국제회의의 기획·운영과정에서 환경보전, 포용성, 인권, 공정성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
8.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국가의 책무) ① 국가는 국제회의산업의 육성·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·재정상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 <u><신 설></u>	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----- ----- -----.
<u><신 설></u>	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회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회의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	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회의의 기획·유치 및 운영 과정에서 환경보전, 포용성, 인권, 공정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, 이를 위하여 사회연대경제 조직(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, 「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「국민기초생활

